

검수규정(3-4-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내자 또는 외자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과 외부로부터 수증한 물품에 관하여 그 검수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제조품, 가공품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물품(소모품, 비품, 영선자재, 실험실습기자재 및 재료, 인쇄물, 출판물, 연료, 차량 및 제반 시설물 포함)을 말한다.

② 검수라 함은 구매물품조서 혹은 수증관계 서류 또는 이에 가름하는 서류와 대조하여 현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검수책임) ① 검수담당자(팀장급)는 철저한 검수로 제반낭비와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토록 하며 검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검수 담당자는 검수에 사용할 인장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사용금지) 구매 또는 수증물품은 검수가 끝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관계자 입회) ①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해당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하며, 입회자는 검수자와 공동 책임을 진다.

1. 구매요구자
2. 사용자 또는 관리예정자
3. 설계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②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 증거로 보관한다.

제7조(검수시기) 검수는 구매자의 검수를 의뢰받아 물품의 반입 직후 혹은 반출 직전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서류제시) 구매자는 검수의뢰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구매물품조서
2. 구매품의서 혹은 수증보고서
3.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

제9조(검수시간) 검수자의 검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09:00~16:00

2. 토요일: 09:00~12:00

제10조(검수의 원칙) ① 검수담당자는 품질, 수량, 규격, 가격 등이 납품조건에 합당한가를 보아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입하는 전 물품은 제조회사를 명시한 서면 및 제품목록에 의하여 (외제물품은 수입 면장) 검수한다.

③ 물품의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 해당부서 또는 기타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검수할 물품의 수량이 다량일 경우에는 발채, 검수할 수 있다.

⑤ 제8조의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수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물의 개조보수) 각종 시설물, 기기류 등을 보수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부품의 교체 기타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자에게 통보하여 보수 전 과정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도급공사) 건물의 신·증축 및 전기, 위생, 냉·난방 설비 등의 공사에 대한 준공 검수는 건설본부의 전문 검수자를 지정하여 검수하게 한다.

제13조(검수합격) ① 검수자가 검수를 필하면 구매부서에서 작성한 구매물품조서에 검수필인을 날인한다.

② 전 항의 구매물품조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매부서 1부, 총무처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검수거부) 검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하고 관계서류를 즉시 해당 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1. 물품구입 기안문서의 내용 및 계약서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물품의 파손, 변질, 감소되어 있는 경우

3. 현품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기타 문제발생이 가능한 경우

제15조(검수불합격) 검수결과 불합격일 경우에 검수자는 불합격 사유를 명기하여 지체 없이 관계서류와 함께 반송, 재 검수해야 한다.

제16조(보고) 검수자는 매일 검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에 검수 통계를 작성,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대금지급) ① 물품대금은 검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사전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 검수할 수 있다.

② 건물 기성고 지불 등은 건설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물품등재) 구매 후 검수합격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자산관리규정」에 의한 물품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